해임처분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7구합○○○○	사건유형	공무원신분
원 고	000	피 고	0000000
판결선고일	2017. 7. 20.	비고	
사건개요	2015.7.1.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		
주 문	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		
청구취지	1. 피고가 2016. 6. 16.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.		
판결이유	비록 원고의 범죄사실 일부가 미인정 되었더라도, 원고의 이 사건 범죄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,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 려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등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.		
결 론	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		